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56
----------	------

2012년 10월 9일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9월 25일, 김문수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12년 10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2년 10월 9일 상정,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문수 의원)

### 가. 제안이유

-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1조제2항이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은 이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 하겠음.
- 동 조례안의 제출 형식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설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구성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의 경우 의원 발의안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sup>1)</sup>

1)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

- 동 조례안이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처우 등의 후속적 행정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 만큼 예외적으로 의원 발의가 가능하다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 요지

- (반대) 선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서 그 효력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무효로 결정하게 된다면 동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찬성) 비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하여 쟁송중이라 하더라도 동 조례안이 유효하게 성립된 선행 조례에 대한 후속적 행정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수행 등) ① 옹호관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9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사무직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무직원은 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③ 옹호관은 센터의 사무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센터의 사무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